

경상북도교육청 - 하남성교육청
교류협력에 따른 양해각서(MOU)

대한민국 경상북도교육청과 중국 하남성교육청은 상호이해 및 호혜의 원칙 아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간 이익증진에 공헌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양해각서는 교육협력 및 교류를 위한 장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함으로써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양 기관은 상호 교류 협력에 있어 호혜 평등을 원칙으로 하며,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별도 합의에 따라 정한다.

제3조(협력분야) 본 양해각서에 의거 양 기관의 협력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교 교류 사업 지원
2. 교사 및 학생 교류 지원
3. 문화 교류를 통한 양국의 이해 구축
4.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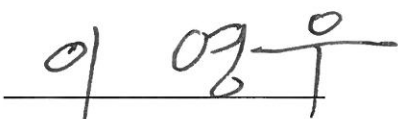
제4조(상호협약) 본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5조(효력발생 및 협정기간) 본 양해각서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합의에 따라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한다.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동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.

본 협정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 2부씩 작성하여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4년 10월 23일

대한민국 경상북도교육청
교육감 이영우



중국 하남성교육청
청장 주청맹

